

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(주식)

□ **정정 사유** : 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③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④ 반기 기준으로 갱신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23. 1. 27.

□ **정정 내용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 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요약정보

투자비용	동종 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2. 11. 30. 기준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2022. 10. 14. 기준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2. 12. 31. 기준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투자자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7 시 이전(경과후): 제 4(5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	17 시 이전(경과후): 4(5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7 시 이전(경과후): 제 4(5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8(9)영업일에 지급	17 시 이전(경과후): 4(5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8(9)영업일에 지급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2.12.31. 기준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2. 12. 31. 기준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최근 3년 경과 내역 삭제	책임운용역 : 안홍익 (2015.03.31 ~ 2018.10.10)	〈삭 제〉
8.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대상 가. 투자 대상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 장주 증권모투자신탁[주 식] 3) 자산유동화증권 :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	-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 장주 증권모투자신탁[주 식] 3) 자산유동화증권 : 〈삭 제〉

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	가) (생략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10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가) (현행과 같음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10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로 하며, <u>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 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 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</u> 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제한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① ~ ⑤ (생략) -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2) 동일종목투자 :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	① ~ ⑤ (현행과 같음) -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2) 동일종목투자 : <u>〈삭제〉</u> <u>〈삭제〉</u>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,5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,5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로 하며, <u>금</u>

	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용투자업규정 제 4-54 조 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
	① ~ ⑤ (생략) (나) (생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 (나) (현행과 같음)
9.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 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 관리	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최근 기준으로 업 데이트	- 2022 년 11 월말 기준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위험 나. 특수위험	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 험 기재 보완	〈신설〉 증권대여위험 : 이 투자신 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 산을 대여할 경우, 중개회 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 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 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 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 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 며,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 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. 증권차입위험 : 이 투자신 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 자증권을 차입할 경우, 차 입 자산을 공매도(short selling)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 게 되면, 매도 시점보다 높

			<u>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그 차액(매도가-매수가)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7 시[오후 5 시] 이전(경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7 시[오후 5 시] 이전(경

가. 매입		과) : 자금을 납입한 영업 일로부터 제 4(5)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 가격 적용	과) : 자금을 납입한 영업 일로부터 4(5)영업일 에 공 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 격 적용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 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 준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 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 기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 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 기
나. 환매		17 시[오후 5 시] 이전(경 과) : 환매를 청구한 날로 부터 제 4(5)영업일에 공 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 격을 적용하여 제 8(9)영 업일에 환매금액 지급	17 시[오후 5 시] 이전(경 과) : 환매를 청구한 날로 부터 4(5)영업일 에 공고되 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(9)영업일 에 환 매금액 지급
		4) 환매제한 제 7 영업일 이전(17 시 경 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 우 제 8 영업일 이전)	4) 환매제한 7 영업일 이전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8 영업일 이전)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 가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주 3) 증권거래비용은 직 전 회계연도 (2021.4.15~2022.4.14) 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 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습니다. 〈신 설〉	주 3)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(2021.4.15~2022.4.14) 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 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습니다. <u>이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 계연도에 발생한 증권거래 비용은 980,471 원입니다.</u>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 과되는 보수 및 비용		〈신 설〉	<u>* 증권거래비용에 포함되 는 항목 : 주식·채권·수 익증권·파생상품·기타</u>

			<u>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(단, 세부지출내역은 편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)</u>
동종 유형 총 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		<u>2022. 3. 31. 기준</u> <u>2022. 11. 30. 기준</u>
기업공시서식 작성기 <신 설> 준 반영			<u>주 6) 금융비용은 총보수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 으며, 직전 회계연도 (2021.4.15~2022.4.14) 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없 습니다.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<u>아래 첨부 참조</u>	<u>아래 첨부 참조</u>
나. 과세			
2) 연금저축계좌			
가입자에 대한 과세			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2. 10. 14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 매 현황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2. 10. 14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 용실적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2. 10. 14.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 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2. 12. 31. 기준</u>
가. 회사개요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 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2. 12. 31. 기준</u>
라. 운용자산 규모			
3. 집합투자재산 관리 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 업자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주요업무 (생략) -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 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	(1) 주요업무 (현행과 같음) -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 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

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 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의 확인업무	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 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, <u>투자 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 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 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 하는지 여부</u> 등의 확인업 무
---	---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 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제 5 영업일</u>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5 영업일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해 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정사항 반영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 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 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 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 니다. ① ~ ② (생략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 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 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서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 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 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 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 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 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 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 니다.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 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 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서 설정한 후 1 년(<u>법 시행 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되는 날 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 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

				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
		(2) ~ (3) (생 략)		(2) ~ (3) (현행과 같음)
3. 집합투자기구의 공 시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정사항 반영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 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 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 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 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 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 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 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 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 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 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 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 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	
나. 수시공시		① (생 략)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 개의 결정 및 그 사유	① (현행과 같음)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 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 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 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	
		③ ~ ⑦ (생 략) ⑧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 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	③ ~ ⑦ (현행과 같음) ⑧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 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항제 1 호의 집 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 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	

	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
⑨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	⑨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
⑩ (생 략)	⑩ (현행과 같음)

※ 별 첨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분	주요 내용									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가.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(이하 “전환금액”)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									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								
공제제도	<table><tr><th>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</th><th>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</th><th>세액공제율</th></tr><tr><td>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</td><td>600만원</td><td>15%</td></tr><tr><td>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</td><td>(900만원)</td><td>12%</td></tr></table>	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	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600만원	15%	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(900만원)	12%
	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							
	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600만원	15%							
	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(900만원)	12%							
※지방소득세 별도 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										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									
분리과세한도	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23.1.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-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-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									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									
해지가산세	없음									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									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지방소득세 포함)									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									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[변경 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600만원 (900만원)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	12%

※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[변경 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600만원 (900만원)	15%
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	12%

※지방소득세 별도

〈삭 제〉

〈신 설〉 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